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92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에 지방 추천 인사의 참여 명문화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4.

3. 회 부 일 : 2025. 1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생명보호·복지증진은 지역별 생태·환경·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에 지방 추천 인사의 참여 명문화

개정안은 동물복지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¹⁾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①·② (생략)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_____ _____ _____ _____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현행법상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집행·조정·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동물 보호·복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음. 동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수의사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범정부 차원의 동물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복지위원회가 중앙정부 및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됨에 따라, 유기동물 관리, 동물보호시설 운영, 반려동물 문화 확산 등 동물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경험과 현장 여건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지역별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와 집행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지방자치법」 제182조)²⁾가 추천

2)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사람을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을 실제로 집행·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경험과 정책 책임성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³⁾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동물보호위원회에 위촉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5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 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제적으로는 ‘제1호(시·도지사) 및 제3호(시장·군수 및 구청장)’이라는 병렬적 표현으로 인해 추천 인원 수와 추천 주체의 범위가 불명확한 바, 문언의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안)

□ (구성) 농식품부 차관(위원장), 정부·민간위원 등 20인 이내

* 공동위원장은 구성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정함

○ (구성비율) 청년정책위원(만19~34세, 1명), 성별 균형(여 42.8%, 남 57.2%), 서울 외 지역(57.2%), 연임·신규위원(연임 42.8%, 신규 57.2%)

*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이 어려운 경우 농식품부 차관이 지명한 순으로 직무 대행(1순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간사는 동물복지정책과장)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25.12.20. ~ '27.12.19.)

* 위원 중 협화업계 대표가 소속 단체의 임원직에서 사임할 경우 후임 대표가 위원직을 승계

□ (운영) 반기별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안전에 따라 필요시 수시 운영

【 위원회 구성 명단 】

	성명	직위		소 속	분야	비고
당연직 (5)	공석	차관		농식품부	동물복지	위원장
	주원철	국장	남	농식품부(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	
	김태오	국장	남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	야생동물	
	오행록	국장	남	해수부(해양환경정책관)	해양동물	
	김상봉	국장	남	식약처(의약품안전국)	실험동물	
위촉직 (14)	조희경	대표	여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단체	연임
	박선미	대표	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동물보호단체	신규
	허주형	회장	남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연임
	이민재	부회장	남	실험동물협회 (강원대 수의과대 교수)	실험동물	신규
	전현정	위원장	여	실험동물학회 인증위원장	실험동물	신규
	김광석	회장	남	반려동물생산자협회 (KOREAPET 대표)	영업자	신규
	김상덕	회장	남	한국펫사료협회 (성보펫헬스 회장)	산업계	신규
	오세진	회장	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한양계협회)	축산단체	연임
	이기홍	회장	남	대한한돈협회	축산단체	연임
	이호규	변호사	남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신규
	박주연	변호사	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	연임
	박미랑	교수	여	한남대학교	교수	신규
	장은혜	박사	여	법제연구원	박사	연임
	이정민	단장	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신규

< 동물보호법 >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복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동물학대분과위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의 대표로서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